

수원지방법원 2020. 11. 12 선고 2020가단7916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

피 고 B

변론 종결 2020. 10. 15

판결 선고 2020. 11. 12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장안등기소 2004.12. 22. 접수 제3990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가. 원고가 1999. 12. 1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,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부동산을 명의신탁받아 위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장안등기소 2004. 12. 22.접수 제3990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.

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, 제2항 본문에 따라 무효이므로,피고는 원고에게 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나. 이에 대하여 피고는,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체결된 임 대차계약의 보증금 상당액인 3억 5,000만 원의 지급과의 동시이행항변을 하나,피고가 위 임대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실제로 반환하지 아니한 이상, 원고가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것에서 나아가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되므로1) , 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2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김민지

별지

1)한편,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을 자신이 수령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,그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가 원고에게 귀속됨을 특별히 다투지 아니한다.